

● 입법예고 및 개정고시

원자력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부공고 제1999 - 54호)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자력법('99. 2. 8) 및 동법시행령('99. 8.)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원자로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과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각각 별도의 부령으로 제정토록 하여 기술기준을 규제대상의 성질별로 차등화하고, 사회환경변화와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함(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방사선방호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 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구분기준을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재설정하여 피규제자의 불필요한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인 안전성확보에 규제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다. 현행 고시로 규정하여 시행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세부요건을 여타 검사와의 형평에 맞추어 각각 부령으로 옮겨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44조)
- 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등의 허가신청시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과 작성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허가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58조)
- 마. 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대행업무의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방사선안전관리자로 같음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69조)
- 바. 업무대행자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시설을 감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시설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에 따라 그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감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함(안 제73조)
- 사.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과 관련하여 방사선기기의 품질보증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에서 수입한 방사선기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설계승인을 대신함(안 제74조)

● 입법예고 및 개정고시

방사선방호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부공고 제1999 - 56호)

1. 제정이유

방사선 이용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용특성에 적합한 기술기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방사선방호에 관한 국제규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자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방사선방호 등에 관련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분배·저장·처리·배출시설 등에 관한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사선안전관리 수행기반을 구축함(안 제4조 내지 제18조)
- 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분배·저장·운반·처리·배출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취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자율적인 방사선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내지 제52조)
- 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의료·이동사용·판매사용 분야별로 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과 취급기준을 세분하여 정함으로서 분야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안전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내지 제52조)
- 라.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등에 대한 안전규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3조 내지 제63조)
- 마. 방사성폐기물 배기시설등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중요한 장치들에 대하여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보된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정함(안 제64조 내지 제73조)
- 바.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운반을 위하여 방사성운반물의 종류를 위험도에 따라 등급별 구분을 하고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반용기의 기술기준과 방사성내용물의 한도량을 합리적으로 정함(안 제79조 내지 제83조)

방사성폐기물의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9-10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3조의 5 및 제23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 입법예고 및 개정고시

제2조중 “과학기술처 장관”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중 “원자핵분열생성물 및 방사성동위원소를”을 “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로 하고 제5호중 “처분”을 “영구처분”으로 하고, 동항 제7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포장하여야”를 “포장하여야 하며 멸균처리된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은 개봉선원폐기물로 분류·포장하여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중 “품목별로”를 “품명별로”로하고 동항제2호내지 제3호중 “2밀리미터의”를 “0.1밀리미터이상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해당발생기관의 장(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이 서명한”을 “해당기관의 장(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과 멸균소독 책임자가 같이 서명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물사체는 자체처분 제한농도(100Bq/g)이상으로서 부패되지 않도록 냉동된 상태 또는 건조후 진공 포장하여야 한다.

동조 동항6호중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비파괴검사용 이리듐192(Ir-192)밀봉선원 폐기물은 발생된 상태로 차폐용기에 넣거나, 또는 발생자가 선원부분과 꼬리(pigtail)부분을 분리한 후 선원부분은 차폐용기에 넣고 선원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꼬리부분은 동시에 인도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처분기준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처분기준을”로 하고 동조제1호중 “처분후”를 “영구처분후”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처분장의”를 “영구처분장의”로 한다.

제10조 제2호중 “처분요건에”를 “영구처분요건에”로 한다.

제12조중 “과학기술처 장관”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한다.

제13조중 “과학기술처 고시 방사선량등에 관한 규정”을 “과학기술부고시 방사선량등을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중 “과학기술처 장관”을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한다.

제22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고시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

● 입법예고 및 개정고시

정 중 냉동된 동물사체의 인도는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 ③ (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시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문속의 RI뉴스

제5회 ‘원자력안전의 날’ 기념식

제5회 ‘원자력안전의 날’ 기념식이 9일 오전11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김종필(金鍾泌)총리, 서정욱(徐廷旭) 과학기술부장관 등 원자력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이날 기념식에는 원자력안전 유공자 31명이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동탑산업훈장(1인) : 이승차(李勝次·한전 울진원자력본부장)

△산업포장(1인) : 추연진(秋淵珍·현대건설 이사)

△대통령표창(단체1기관, 개인3명) : 한전영광제2발전소, 서영수(徐暎洙·한일원자력(주) 대표), 김영종(金永宗·삼성물산 상무), 김효정(金孝正·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국무총리 표창 (6인) : 이상원(한전기공 울진1사업소 부소장) 이문세 (과기부 원자력국 고리주제관실 공업서기관), 박연선 (한국전력 방사선안전팀장), 지계광(한국전력기술 주임기술원), 김태호(동아건설 부장), 이원재(원자력연구소 책임연구원)

△과기부장관 표창(15명) = 유재관(한전기공 고리2사업소 과장), 정희윤 (한전기공 팀장), 송재환(한국전력 전원계획처 과장), 정구관(한국전력 과장), 이승철(한국전력 전력홍보부 과장), 김과식(한전 울진1발전소 부소장), 이광우(포철 과장), 설증균(한전원자력연료 과장), 장정웅(영동세브란스병원 기사장), 김순기(한중), 이광남(한국전력기술 주임연구원), 이영배(한전원자력연료 과장), 박재홍(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문정수(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모임 사무총장) 최성남 (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